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6.11.23(수) 14:00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#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임병운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3. 제안 이유

- 농업기술원이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 제17조제1항을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와 제34조로 하고,
- 「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6조제1항을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9조제1항으로 함.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농업기술원이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.